

의안번호	2212957
의 퇴 인	최민희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1.
추 계 번호	25B509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둘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7,000만원 (연평균 5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구성 (안 제48조의2)	30	60	60	60	60	270	54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출자료를 참고하고, 2026년 하반기부터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운영 시기,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의2(침해사고의 대응 등)	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(제7항 신설) 1.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.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·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(제8항 신설)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. 침해사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. 다만,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8조의2(침해사고의 대응 등)	○	•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 - 다만, 2026년의 경우 하반기부터 침해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·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48조의2)
 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민·관 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,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**(민간위원 수)** 개정안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침해 사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하므로, 민간위원의 수는 6명으로 가정함
- **(회의개최 횟수)** 회의개최 횟수는 연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 50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(2024년 기준 1,887건, 1일당 평균 5건)를 고려할 때 연 50회(매주 1회)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
 - 다만, 2026년의 경우 하반기부터 침해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 25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침해사고 신고 현황

(단위: 건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(상반기 기준)
건 수	1,277	1,887	1,034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'2025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(상반기)'

- **(회의참석 사례금)**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¹⁾
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**(추계 결과)**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둘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7,000만원(연평균 5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민간위원 수(A, 명)	6	6	6	6	6	-	-
회의개최 횟수(B, 회)	25	50	50	50	50	-	-
회의참석 사례금(C, 만원/명·회)	20	20	20	20	20	-	-
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	30	60	60	60	60	270	54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출자료를 참고하고, 2026년 하반기부터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운영 시기,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 편성(기획재정부,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, 2025. 5. p.222.)

IV. 부대의견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출자료를 참고하고, 2026년 하반기부터 침해 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운영 시기,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